

## 제 2주제

#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최문희(충청남도 건축도시과) -



---

#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--

1. 총괄 현황
2.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
3.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
4. 협조 요청사항
5. 참고자료

**충청남도**  
(건축도시과)

# 1. 총괄 현황

◇ '13. 12월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, 하위법령 제정, 기본방침 수립, '14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추진중

## 1 하위법령

- 법 시행일정(12.5일)에 맞춰, 현재 시행령안 입법예고·관계부처 협의(7.5일~8.16일)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까지 완료(10.4일)
- 10.7일 법제처 심사 요청, 차관회의·국무회의(11월)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령 제정 완료 추진

##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

-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, 국가의 중점 시책, 선도 지역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방침(안) 마련중(5.8~)
- 11월중 공청회 개최,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, 도시재생특별위원회(총리), 국무회의 등 거쳐 12월중 대통령 승인

## 3 전략계획·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

- 9월부터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작성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중(국토부·LH·학계 등 작업반 구성)
- 11월 기본방침 공청회 시 초안 공개, 12월까지 마련하여 배포

## 4 '14년도 정부예산 편성

- 정부안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일부 등 **243억원** 반영  
※ 실시계획수립비(10.4억원), 사업비(220억원), 도시재생지원 기구 운영비 등(12.6억원)

## 2.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

### 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변경사항

□ 국가의 보조 관련(영 제36조 및 제37조)

- 도시재생 국비보조 항목 및 항목별 지원비율 규정(제36조) 및 재정여건과 실적평가 등에 따른 차등지원 규정(제37조) 삭제 (기획재정부)

⇒ 구체적인 항목·지원비율과 차등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정

시행령 입법예고(안)	수정(안)
<p>제36조(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)            ①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.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 <p>제37조(차등 지원의 기준 및 방법)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하는 금액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36조(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)  <u>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,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·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

## ② 지자체 제출의견 조치결과

### 1. 국가지원 관련(영 제36조 및 제37조)

- 지원비율 상향, 지원항목 확대, 차등지원기준 변경(재정자주도 → 재정자립도) 등(인천, 대구, 대전, 강원, 충남, 전북, 경남, 의왕시)
- ⇒ 구체적인 항목·지원비율과 차등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정

### 2. 전담조직 관련(영 제12조 및 제14조)

#### ① 시행령에서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(충남, 경북)

- ⇒ 법 제9조에서 전담조직 설치를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, 시행령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함
- \* 추후, 안전행정부와 지방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겠음

#### ② 도지사, 구청장등도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(대전, 경기)

- ⇒ 전략계획수립권자 외에 도지사, 구청장 등도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 전문가 채용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시행령 입법예고(안)	수정(안)
제14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 ① <u>전략계획수립권자</u> 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	제14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 ① <u>전략계획수립권자·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</u> -----

### 3. 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 관련(영 제20조)

-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조례로 재위임, 활성화지역 지정기준 항목 추가(서울, 경기, 의왕시)
- ⇒ 법에서 인구, 산업, 노후주택 등 3개 조건을 명시하고, 그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조례로 재위임하거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임

### 4. 선도지역 지원 관련(영 제47조 및 제48조)

- 선도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전체 기반시설 또는 전체 공동이용시설로 확대(대구, 강원, 전북)
- ⇒ 선도지역에 대해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지원요구 등 우려

### 5. 활성화계획에 도시재생관련 조직 활성화방안 포함(영 제27조, 인천)

- ⇒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방안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필요

시행령 입법예고(안)	수정(안)
제27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) 1. ~ 2. (생략) 3. <신설>	제27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</u>

### 3.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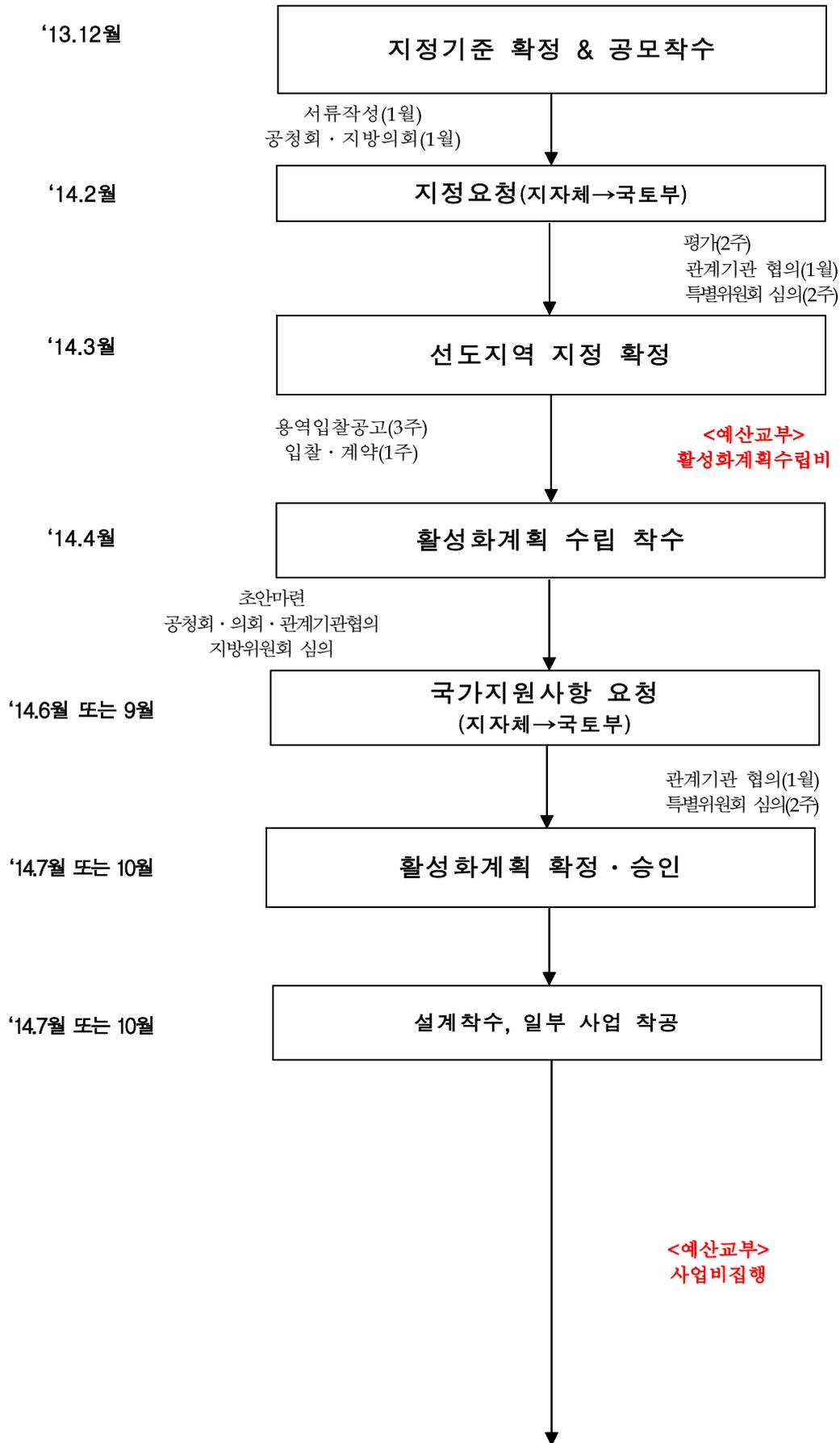
#### 1 2014년도 정부예산(안) 개요

- 총예산 : 243억원(계획수립비 + 사업비)
  - ※ 계획수립비(10억원), 사업비(220억원),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등(13억원)
- 대상 : 도시재생선도지역(근린재생형 및 경제기반형)
  - 근린재생형 :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상가·주거지 생활여건 개선, 생활인프라 확충, 공동체 활성화 등
  - 경제기반형 : 산단, 항만,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재생하고, 새로운 고용기반 창출
- 선도지역 개수, 개소당 지원금액 및 보조율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으로 확정

#### 2 2014년도 추진일정(안)

- '13.12월 선도지역 지정기준 확정(대통령승인), '14.3월 선도지역 지정
- '14.4-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(10.4억원 집행)
  - 준비도가 빠른 지자체는 6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하고, 그 외 지자체는 9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
- '14.7-12월 도시재생사업비 지원(220억원 집행)
  - 6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조기수립한 지자체 위주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

# 〈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추진일정(안) 〉



## 4. 협조 요청사항

### ① 철저한 사전 준비

- '14년은 선도지역 지정, 계획수립, 사업착수까지 일정이 빠듯함
  - 사업·일정관리가 느슨하여, 저조한 실집행률 등으로 사업초기부터 문제사업으로 지적받게 되면 향후 추진동력 저하
- 선도지역은 사전 사업구상, 주민참여 및 재생역량 등을 감안하여, 사전준비도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함으로써, 가시적인 성과창출 필요
  - 선도지역 지정 지자체 중에서도, 사전 준비가 빨라서 조기에 계획수립 등을 완료하는 지자체 위주로 사업비 지원계획
  - ※ 선도지역 지정 요청 및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, 지방의회 의견수렴, 지방위원회 자문 등 사전절차 조속이행, 지방비의 확보 등 필요

### ② 지나친 지역간 경쟁 과열 예방

-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, 선도지역은 성공확률이 높은 소수 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임
- 이후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,
  - 시·도에서 선도지역 지정을 둘러싼 관할 시·군·구간 지나친 경쟁보다는 우선 내실을 다지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

### ③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- 주민이 스스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'주민참여형'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주민 교육·홍보 등 필요
  - 또 다른 중앙주도형 보조사업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 필요(연말 국토부에서 브로셔·리플릿 등 제작·배포예정)

## 5. 참고자료

---

### 1. 도시재생사업

- 가.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  - 나.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  - 다.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·사회적·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
  - 라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  - 마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  - 바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  - 사.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  - 아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  - 자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(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) 지정에 따른 사업
  - 차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
  - 카.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

- 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
- ③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
- ④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
- ⑤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

**2. 마을기업** :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, 향토, 문화,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

### 3. 도시재생기반시설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

- ①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  - 교통시설 :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·자동차정류장·궤도·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
  - 도로 :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도로, 고가도로, 지하도로
  - 자동차정류장 : 여객자동차터미널, 화물터미널, 공영차고지, 공동차고지
  - 광장 : 교통광장, 일반광장, 경관광장, 지하광장, 건축물부설광장
- ② 광장·공원·녹지 등 공간시설
  - 공간시설 : 광장·공원·녹지·유원지·공공공지
- ③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 등 유통·공급시설
  - 유통·공급시설 :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·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·시장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
- ④ 학교·운동장·공공청사·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·문화체육시설

- 공공·문화체육시설 : 학교·운동장·공공청사·문화시설·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·도서관·연구시설·사회복지시설·공공직업훈련시설·청소년수련시설

⑤ 하천·유수지(遊水池)·방화설비 등 방재시설

- 방재시설 : 하천·유수지·저수지·방화설비·방풍설비·방수설비·사방설비·방조설비

⑥ 화장시설·공동묘지·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

- 보건위생시설 : 화장시설·공동묘지·봉안시설·자연장지·장례식장·도축장·종합의료시설

⑦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- 환경기초시설 :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·폐차장

나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, 마을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

① 탁아소·어린이집·경로당 등 돌봄·사회복지 서비스시설

② 놀이터, 마을회관 등 취미·학습·체육활동 등의 활용을 위한 시설

③ 지역사회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마을방송국·마을신문사

④ 공동작업장·구판장·세탁장·화장실 및 수도

⑤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

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

4. 기초생활인프라 :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